

#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18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1. 11. 7.

발 의 자 : 한갑수 의원

## □ 개정이유

-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부여하며,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 5일간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함.  
(안 제18조제3항)
- 나.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 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함.(안 제18조제8항)
- 다. 격무직원 및 시정 유공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함.  
(안 제18조제9항)

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□ 관계법령 발췌서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,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3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,
-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현행조례)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입법예고(예정) : 2011. 11. 11.(금) ~ 11. 16.(수)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경기도내 타시군 특별휴가 실시현황

## **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, 제8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⑧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,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 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
⑨ 시장은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### 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특별휴가) ①~② (생 략)	제18조(특별휴가) ①~②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~⑥ (생 략)	⑤~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⑧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,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<u>〈신 설〉</u>	⑨ 시장은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업무 처리에 지정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#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18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1. 11. 21.  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.

## □ 수정이유

- 공직내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최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휴가일수를 조정함.  
(10일→5일)(안 제18조제8호)

## **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**

제18조제8항 중 “10일간의”를 “5일간의”로 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⑦ (생 략) ⑧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<u>10일간의</u>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,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 ⑨ (생 략)	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⑦ (원안과 같음) ⑧ ----- ----- <u>5일간의</u> ----- ----- -----. ⑨ (원안과 같음)